

사업방법서 별지 (조립공제 - 독일식)

1. 공제의 종류 : 기술공제/조립
2. 공제종목의 명칭 : 조립공제
(Erection All Risks Insurance Policy - Munich Re's Form)
3. 공제의 목적
 - 가. 동산 및 부동산(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)
 - 나. 법률상배상책임
 - 다. 상실이익
 - 라. 비용손해
4.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기간 : 공사기간
 - 나. 공제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4회납, 자유납
5. 공제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 - 가.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나.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9조(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)의 제3호에 따라 계약자 특성에 따른 공제료의 할인할증은 “언더라이팅 할인할증기준”에 따른다.
6. 기타
공제료의 반환 : 관계법규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